

#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친화도시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고나 경고 없이 무기한 집중단속 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에는...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 과태료 4만원
-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 과태료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8시~20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승합차 등 9만원)입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자전거도로에서는 단속과 동시 견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북구청(교통지도과)  
TEL. 920-3485~6

# 불법 주·정차단속 스티커(PDA용) 제작안

<앞면>

No. \_\_\_\_\_

## 과태료부과및견인대상 차량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본 스티커를 지참하여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 및 제출방법 뒷면 참조(의견진술 문의 ☎2241-3510,

FAX2241-6559)

※ 성북구 홈페이지 <http://parking.seongbuk.go.kr>에서 의견진술 제출 및 과태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 문의 ☎2241-3509)

### ○ 위반내용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PDA 스티커 부착	1.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10. 주·정차(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11. 다른 교통에 장애(2중, 3중 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주·정차 등)가 되도록 주차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예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뒷면 참조)	

## 성 북 구 청 장 (직인)

차량소유자 귀하



No. \_\_\_\_\_

# 과태료부과대상차량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 156조, 제160조,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집중단속**합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본 스티커를 지참하여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 및 제출방법** 뒷면 참조(문의 ☎2241-3510 FAX2241-6559)

※ 성북구 홈페이지 <http://parking.seongbuk.go.kr> 에서 의견진술 제출 및 과태료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납부 문의 ☎2241-3509)

○ 위반내용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PDA 스티커 부착	1.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전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전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 8.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10.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11. 다른 교통에 장애(2중, 3중 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주·정차 등)가 되도록 주차 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예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 합니다. ※ <b>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뒷면 참조)</b>	

## 성 북 구 청 장 (직인)

차량소유자 귀하









<별지5> 의견진술서

# 의견진술서

(1) 위반차량

스티커 번호	단속일시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종(명)
NO	년 월 일			

(2) 진술내용

---



---



---



---



---

(3) 진술인 주소(회신받을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 - )  
 201 년 월 일

**성북구청장 귀하**

◆의견진술 기한내에 서면 또는 FAX, 우편 등으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으며 심의결과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의견진술대상차량 및 진술서 구비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

항목	사유별	구비서류
1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관할 경찰서)
2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3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5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서)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7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 경찰서) ② 교통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 내역서
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차량	통행지정증(지방경찰청 발행),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경찰서 발행)

※ 위 의견진술대상차량의 구비서류는 귀하의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 안내**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며, 아래에 기재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2008.6.22 이후 단속 분부터 적용)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앞면에 안내된 납부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내)	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	42,0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승합차, 화물차(4t이상)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2,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이의가 없으면서 의견진술기한내에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